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47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7. 3.

다. 회부연월일 : 2025.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정책지원관 지원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은 전문적인 입법·정책 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초광역적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가 충분한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41조¹⁾를 준용하여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0조).

현행	개정안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u>같은 조 제3항</u> , <u>제41조</u> ,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 ----- ----- ----- ----- ----- ----- ----- ----- ----- <u>같은 조 제3항</u> , ----- ----- ----- ----- ----- ----- ----- ----- -----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22. 1. 13.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현행법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책지원 전문인력 개요>

□ 개념 및 역할

- (개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인력
- (역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인사청문회 등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
 -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정활동 지원범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인사청문회,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등

□ 신분 및 보수

- (신분) 일반직지방공무원(광역: 6급 이하, 기초: 7급 이하)
 - ※ ‘비임기제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81,239	54,132
7급(상당)	66,396	47,157

□ 운용현황

- (정수)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배치)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 정책지원총괄팀 등 배치

※자료: 행정안전부

1)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현행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어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없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함.

이에 따라 2024. 12.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가 설치한 충청광역연합이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운영 중에 있으며²⁾,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총 16명(대전광역시의회·세종특별자치시의회·충청북도의회·충청남도의회 각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³⁾.

2) 참고로, 2022. 4.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았으나, 2023. 3. 폐지규약에 따라 해산되었음.

3) 「충청광역연합규약」

제8조(의회의 구성) ① 연합의회는 구성단체의 지방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합의회 의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며, 시도별 의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의회 4명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4명
3. 충청북도의회 4명
4. 충청남도의회 4명

③ 연합의회 의원이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해당연합 의원을 선임한 구성단체 의회는 조속히 연합의회 의원을 선임하여야한다.

<충청광역연합 개요>

□ 추진경과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23.1.)
- 충청광역연합 **규약안 행정안전부 승인**(’24.10.)
- 충청광역연합 **출범**(’24. 12. 18.)

□ 조직 및 사무

- **2개 사무처**(연합사무처, 연합의회사무처), 파견 **공무원 60명***
*연합사무처 41명, 연합의회사무처 19명
-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 **국가 위임사무 1개****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 수행
*(이관사무) 초광역 도로·철도·교통망 구축, 초광역 산업(바이오·모빌리티 등) 육성 등
**(위임사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국토부 위임)
- ’25년도 **예산규모 총 56억원** (사업비 30억원, 의회 3억원, 운영비 23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초광역적 정책을 심의·의결⁴⁾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가

4) 「충청광역연합규약」

제6조(연합의 사무) ① 연합은 구성단체로부터 이관받은 다음 각 호의 사무(2개이상의 구성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를 광역적으로 처리한다.

1.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3.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무
4.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5.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6.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
7. 초광역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에 관한 사무
8. 초광역 주요 산업 연계 및 육성에 관한 사무
9. 초광역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1. 초광역 첨단 코스메틱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지역기업 육성 및 통상 지원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무
16. 초광역 농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17. 초광역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무
18. 초광역 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9. 초광역 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20. 초광역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무

충분한 의정활동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참고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음.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2024년 12월 18일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된 날입니다.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공식 출범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은 광역철도 및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충청권 광역 교통망 구축과 함께, 문화·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과제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범 초기인 현재, 행정적·재정적 기반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기능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중 략)...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210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은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초광역 사무를 다루는 전문적인 의정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1. 그 밖에 각 구성단체가 합의하여 연합에 이관한 사무

② 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광역적으로처리한다.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제11조(의결사항) 연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2. 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연합의 장의 선출

4. 구성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6. 연합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사항

...(중 략)...

그동안 본 연합의회는 수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개선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조속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중 략)...

하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 정책지원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해 주십시오.

다만, 개정안과 같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정활동 현황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소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2025. 1. 1.부터 2025. 8. 31.까지의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처리의안은 총 42건이고, 대전광역시의회는 총 202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총 213건, 충청북도의회는 총 252건, 충청남도의회는 총 276건이며,

<충청광역연합의회 및 구성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정수 및 처리의안>

(단위: 건)

	광역연합 의회	대전광역시 의회	세종특별 자치시의회	충청북도 의회	충청남도 의회
의원정수	16	22	20	35	48
조례안	8	140	143	197	154
예·결산안	2	12	10	6	11
동의안	2	23	30	22	29
건의안	7	10	0	5	40
결의안	1	2	6	1	11
기타	22	15	24	21	31
합계	42	202	213	252	276

※자료: 각 의회 의안통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연간 약 8억원 수준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595	609	624	639	654	3,120
기관부담금	78	80	82	85	88	412
기본경비	137	140	143	147	150	718
자산취득비	40	-	-	-	-	40
합 계	849	829	849	870	892	4,290

※ 현재와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수(충청광역연합 1곳)와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 8명을 신규채용 인력으로 가정한 결과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도 지원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의정활동 경과 및 업무량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